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】

의안 번호	679
----------	-----

2022. 3. 23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3. 10. / 운영위원회

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3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청원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인용조문 및 자구 정비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학철)

- 본 규칙안은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불명확한 자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명료하고 효율적인 규칙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